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18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711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1,484,640원, 지방교육세 3,310,220원, 농어촌특별세 2,043,070원, 등록면허세 102,362,580원, 지방교육세 17,386,050원 합계 119,748,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18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 종중은 자신의 소유인 [redacted]시 [redacted]구 C 대 5,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2. 8. 8. 원고, D, E, F, G, H, I, J 명의로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하였다.

나. 그 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합유자들이 모두 사망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 [redacted]지원 등기과 2013. 7. 16. 접수 제33174호로 나머지 합유자들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합유자 원고, D, E, F, G, H, I, J'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나머지 합유자들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41,484,640원, 지방교육세 3,310,220원, 농어촌특별세 2,043,070원, 등록면허세 102,362,580원, 지방교육세 17,386,0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B 종중이고, 원고는 D, E, F, G, H, I, J과 함께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수탁하여 합유 등기를 마쳤다가 나머지 합유자들이 사망하여 형식적으로 원고 명의로 변경등기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18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등

지방세법은 '부동산의 취득' 등을 과세객체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 '취득'에 관하여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매매, 교환 등)이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상속)이든, 원시취득(공유수면의 매립 등)이든 승계취득(매매 등)이든, 유상취득(매매 등)이든 무상취득(증여 등)이든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다른 합유등기명의인들이 사망하자 그 등기명의인을 잔존 합유자인 원고로 변경등기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취득세가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B 종중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할 지방교육세를,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18

세할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한 것 또한 적법하다.

2) 등록면허세 등

등록세 역시 유통세로서 그 과세객체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이며, 외형상 등기·등록의 형식요건만 갖추면 되고, 그 명의자가 목적물을 실제로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

다른 합유자들이 사망하자 그 합유자들 명의를 원고로 변경등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합유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24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기하여 지방세법 제150조 제2호에 따라 등록세할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것 또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형

판사 강미희

판사 조용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18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끝.